



질의와 회신

지방세법령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1. 장애인 소유자동차 매각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여부

질의

장애인이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를 받은 후 자동차의 차량고장(엔진결함)이 수차례 발생하므로 자동차판매회사에서 제조상의 결함을 인정하여 당초 구입당시 구입가를 환불하고 당해 차량을 회수하는 경우 장애인 소유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데 대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조례 중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등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 등)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른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당해 자동차를 양도할 수 밖에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사유로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등의 내부적인 사유와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외부적인 사유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누구나 납득이 가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으로, 귀 문의 경우 장애인이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를 받은 후 당해 자동차의 차량고장(엔진결함)이 수 차례 발생하므로써 자동차판매회사에서 제조상의 결함을 인정하고 구입 당시 구입가를 환불하는 조건으로 자동차를 회수하는 경우라면,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양도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세과-327('08.4.3)]

2. 전세권 이전등기시 등록세 감면여부

질 의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정보화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전자정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함)으로 변경되어 설립되면서, 그 근거법률인 전자정부법 부칙(법률 제8171호, 2007.1.3) 제4조에서 “조합”의 권리·의무는 “개발원”이 이를 포괄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초 “조합”명으로 설정된 전세권을 “개발원”명으로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21조 제2항의 규정 등에 의해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가.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21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또는 민간출자분(출연분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한



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제3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에서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소유권”이 아닌 “전세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 전세권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는 면제할 수 없다고 사료되나,(세정13407-382,1995.4.22. 참조)

다. 전자정부법 부칙(법률 제8171호, 2007.1.3) 제2조 제1항에서 종전의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발원”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 “조합”은 “개발원”이 설립될 때까지 존속하되, “개발원”이 설립될 때까지는 종전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 “조합”이 취득하였거나 관계 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하여 취득하기로 한 재산·시설·사업 및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개발원”의 설립과 동시에 “개발원”이 이를 포괄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법인격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3859, 2007.9.18. 참조)

라. 귀 문의 경우 종전의 “조합”명의로 등기된 전세권을 포괄 승계하여 “개발원”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라면, 그 전세권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매 1건당 3,000원)을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세과-695('08.4.30)]

3. 조직변경에 따른 등록세 세율에 대한 질의

질의

-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을 특수법인으로 조직 변경함에 있어 조직변경 전의 법인은 해산등기를 하고, 조직변경 후의 법인은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조직변경후의 법인에 있어 법인설립등기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법인변경등기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 ② 가항에 의한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한국산재의료원이 부동산을 승계받는 경우 취득에 해당되는지와 부동산등기에 따른 등록세 적용세율

회신

가.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동법 제131조제1항제8호에서 제1호 내지 7호 이외의 등기는 매 1건당 3,000원을 적용하고,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동법 제137조 제1항제1호에서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은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의 1,000분의 4를, 그 2호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 법인은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14조에서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관리기구인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은 이법 공포 후 산재의료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2008년 7월 1일에 산재의료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산재의료원은 설립등기일에 관리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고 규정하여 조직변경에 관한 근거 법령을 두고 있습니다.

다. 질의 가 : 귀 문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이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특수법인인 한국산재의료원으로 조직변경을 하면서 조직변경 전의 법인은 해산 등기를 하고 조직변경 후의 법인은 설립등기를 이행하는 경우 법인이 해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인격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단순한 명칭변경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변경을 하여 법률상 다른 종류의 법인으로 설립등기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법인설립등기에 따른 등록세(지방세법 제137조제1항)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라. 질의 나 : 조직변경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후에 산재의료원은 산재의료관리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 받으면서 조직변경 전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조직변경 후의 법인명으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는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나, 등록세는 등기형식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고 조직변경을 등기원인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이행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8호(3,00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도세과-697('08.4.30)]



4. 조특법상 물적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질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축산물가공업부문을 분할하여 “(주)농협○○○”을 설립하면서,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닌 관계로 물적분할이 곤란하자 현물출자방식(발기설립)을 취하여 내국법인을 신설하였는 바, 현물출자방식(발기설립)으로 설립된 “(주)농협○○○”이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물적분할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농특세 비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제120조제1항제9호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제1항)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9조제1항제7호 및 제120조제1항제6호에서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등기와 관련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같은 법에서는 물적분할에 관한 규정이 없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당초 사업의 일부를 현물출자방식을 통하여 “(주)농협○○○”를 설립함으로써 사업을 이전하였으며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0호에서 말하는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다. 다만, 현물출자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요건을 갖추어 같은 법 제119조제1항제7호 및 제120조제1항제6호의 취득·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세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할 수 있으나, 이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세과-302('08.4.2)]

5.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환급지

질의

소득세 납부기한 후 신고자에게 소득세할 주민세 과오납금 환부액이 발생한 경우 당해 소득세할 주민세가 과오납된 자치단체에서 환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납부기한 후 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서 환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서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득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다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 또한,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4항에서 “세무서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할 주민세를 환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라. 귀 질의와 같이 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이를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이에 따른 기한 후 신고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소득세할 주민세는 환부 받을 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서 환부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시군세과-402('08.4.15)]

6. 주택재개발조합의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질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인 주택재개발조합이 취득한 부동산중 일반분양분과 상가부분이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및 제127조의2 제2항에 의한 체비지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주택재개발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완공에 따라 체비지로 일반분양분 주택과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동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세과-580('08.4.22)]

7. 지주회사 과점주주 취득세 면제에 관한 질의

질의

① 갑 법인의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추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 공정거래법 제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하고 합병된 갑 법인의 지주회사요건을 판단하는 시기

<사실관계>

- 2004.11.15. : 갑 법인 설립 - 회계연도(매년 7.1 ~ 익년도 6.30)
- 2005. 1.12. : 제3의 외국법인이 소유한 을 법인 발행주식을 100%취득 - 지방세법 제22조의 과점주주 성립
- 2005. 4. 4. : 을 법인의 갑 법인 합병

회신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동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동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의2 전단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2. 제1호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귀 문 가의 경우 지주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자산총액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보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갑 법인의 지주회사의 요건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산총액 부분은 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날 이후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됩니다.

라. 귀 문 나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하고 합병된 갑 법인의 지주회사 요건 구비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시기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 되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라면 지주회사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지는 바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세과-516('08.4.18)]

8. 체비지 보존등기시 등록세 과세표준

질의

법인이 1994.4.12. 체비지를 취득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완료 후 2008.1.29.에 체비지 보존등기함에 있어 등록세 과세표준을 법인장부가액에 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이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아 그 변경된 가격이 법인장부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 등기·등록자의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 제130조제3항의 단서규정은 법인이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을 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당해법인이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 법인장부상에 변경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단서규정의 적용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완료 후 체비지 보존등기에 따른 등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법인이 당초 취득물건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아 법인장부상에 변경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세과-406('08.4.10)]

9. 축사 부속토지가 농지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축사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나. 한편, 농지법 제2조제1호에서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전·답·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나목에서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농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 다. 비과세·감면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서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고 판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 라.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는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 되어 있는 농지로서 자경농민이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한한다 할 것으로, 귀문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축사 부속토지를 자경농민이 취득하여 축사 및 그 부속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당해 축사의 부속토지는 사실상 대지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도세과-300('08.4.2)]

10. 통신판매업의 면허세 납세여부

질의

'07.4.1일자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후 '08년도에 말소한 통신판매업에 대해서 '08.1.1.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회신

- 가. 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행정행위(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중 지방세법 제160조제2항에 규정된 면허(행정행위)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허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 나. 또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 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면허세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 제161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 따라서 귀 문의 통신판매업의 신고가 '07.4.1 이루어진 후 '08.1.1 이후 폐업을 하였다 할지라도 귀 문의 면허가 지방세법 제160조제2항 및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된다면 '08.1.1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면허세 납세의무가 발생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과-381('08.4.8)]

11. 학술연구단체 해당여부

질의

한국민족학술의 연구를 장려 지원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학술재단이 지방세법상 감면대상 법인인 학술연구단체 또는 장학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 가.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나. 학술연구단체 또는 장학단체 등의 범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 예산 및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되, 학술연구사업 등이 부수업무 또는 지원업무가 아닌 “주된 사업”이어야 하며, 주된 사업의 판단은 당해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실적 및 예산의 사용용도 등에 있어 그 비율이 높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1995.5.23. 대법원 94누7515판결 참조)으로,

다. 귀 문의 경우 한국민족학술의 연구를 장려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이 학술연구비 지원, 학술기관 및 단체지원, 현저한 공로자에 대한 학술상 시상 등인 경우라면, 이는 학술연구사업 또는 장학사업이 주된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재단법인 동송학술재단은 위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 또는 장학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세과-486('08.4.16)]

12. 체비지 취득에 따른 취득의 시기

질 의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를 취득하면서 환지처분공고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 취득의 시기

<사실관계>

- 사업명 : 00시 00동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사업시행인가일 : 1999.09.01
- 착공일자 : 2005.10.1
- 체비지 매매계약일 : 2005.12.1
- 체비지 잔금지급일 : 2007.5.1
- 환지처분공고 예정일 : 2008.8월 예정

회 신

가. 도시개발법 제35조제4항에서 시행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5항 본문에서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에 당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당해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이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입하면서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인 2007.5.1 잔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 취득한 상태이고 환지처분 공고일 익일에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환지처분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이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세운영과-2('08.5.20)]

13. 취득세 등 환부대상 해당여부

질의

의정부지방법원 조정조서에 의한 원인무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증여인에게 환원된 경우 수증인이 기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환부되는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과 같이 수증인이 증여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한 후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증여계약의 원인무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경우라면 실제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할 것(대법원2006두14384, 2007.1.25)이므로, 수증인은 당초 증여계약이 원인무효가 되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대상이라 하겠고,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공부상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데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이때 등기 등록행위는 외형상 등기 또는 등록의 요건만 갖추면 과세객체가 충족되는 것이므로 어떤 사유에 의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등기 등록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대상(행정안전부 지방세정팀-2362, 2007.6.20 참조)이 아니라 하겠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조정조서 등에 의한 원인무효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1('08.5.20)]

14. 법인의 재분할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여부

질 의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한 “갑”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해 “을”법인을 신설하였고 5년 이내 다시 “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을 재분할하여 “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기간 산정 기준

회 신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9호에 따라 법인이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1호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법인의 재분할 시에는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을 “을”법인이 다시 “병”법인으로 분할 승계하는 경우에 “갑”법인이 영위한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행정안전부 도세과-393('08.4.10) 참조),

다. 귀 문의 경우 “갑”법인이 영위한 사업기간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갑”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운영과-3('08.5.20)]

15.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질 의

산업단지 내 토지를 2004년에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받은 후 2006년에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한 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7년에 잔금을 지급받아 매각하였는 바, 취득당시와 환매계약 당시에는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법률의 개정(2006.12.30. 법률 제8147호)으로 인해 소유권이전 당시에는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여부



<사실관계>

- '04. 07월 : 산업단지 내 토지 취득(취득세 등 감면)
- '05. 08월 : 산업단지공단에 산업단지 내 토지 처분 신청
- '06. 07월 : 산업단지공단에 양도 대상자 선정 요청
- '06. 07월 : 산업단지공단에서 양도 대상자 선정 통보
- '06. 07월 : 공단이 지정한 자와 매매계약 체결
- '07. 06월 : 잔금을 지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회신

가.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개정된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 부칙 제4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경우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받은 후 추징요건을 규정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일 이후에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 '07.1.1시행) 부칙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당시의 지방세 법령에 따라 취득세의 부과 또는 감면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한 당시의 법령인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적용하여 추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서울고등법원확정판결 2005누1802, 2005.11.3. 참조).

[지방세운영과-8('08.5.20)]

16. 영농자금 등 융자지원에 관한 감면

질의

중앙회가 아닌 지역농협 등에서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자금용도에 상관없이 등록세의 감면대상인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 제264조제1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이들 조합 등의 중앙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는 영농자금·영어자금·축산자금 또는 산림개발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지방세법 제264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중앙회 및 연합회가 농어업인에게 융자하는 경우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영농자금·영어자금·축산자금 또는 산림개발자금에 한하여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이나, 조합 등의 중앙회 및 연합회가 아닌 지역농협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하는 경우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자금의 용도에 상관없이 등록세를 감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세운영과-7('08.5.20)]

17. 하도급업자에 대한 감면

질의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갑”이라 함)과 주택건설업자(이하 “을”이라 함)이 아파트재건축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분양수입금 등으로 “을”의 공사비를 충당하기로 하였으나, “을”이 “갑”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기 위하여 “갑”이 소유하는 아파트 178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여 대물변제계약을 한 경우 “을”이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아파트가 강원도세 감면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가. 강원도세 감면조례 제15조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 및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사업자(이하 이조에서 “하도급업자”라 한다)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아 하도급업자의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서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9호에서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10호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경우 “갑”과 “을”이 아파트재건축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을”이 “갑”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기 위하여 “갑”이 소유하는 아파트 178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여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갑”과 “을”은 원도급자와 수급자의 관계인 바, “을”이 대물변제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공동주택은 원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서 하도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강원도세 감면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동 조례의 적용은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6(08.5.20)]

18. 재산세 별도합산 대상토지 여부

질의

일반상업지구내에 위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적용배율 면적 범위내에 속하며 그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그 건축물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동법시행령 동조 제2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해서 산정한 면적 범위내 이며 동법시행령 동조 동항 나호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이 건축물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범위안의 면적이고 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초과하는 경우라면 별도합산과세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세운영과-20('08.5.26)]

19.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

상속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와, 과세가 된다면 적용되는 취득세 과세표준

회신

가. 지방세법 제105조제9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동법 제110조제3호 가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1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경우 상속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라면 당해 주택



에 해당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취득세가 비과세 된다 할 것이나, 상가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제111조제2항에 의한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세운영과-16(08.5.23)]

20.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해제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질 의

- ① 개인간 부동산 매매계약을 2005.9.29. 체결하고 매수자가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5.10.4.로 취득신고를 한 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해제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② 납세의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 : 귀 문의 경우 甲(매도자)과 乙(매수자)이 2005.9.29.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乙이 검인 계약서상에 2005.10.4. 잔금지급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다가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무불이행 등으로 당사자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 하더라도 취득 후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사료되오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 질의 나 : 지방세법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동법 제73조 및 제74조 에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의 경우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문과 같이 취득세 부과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구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세운영과-15('08.5.23)]

21. 할부금융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한 신설법인이 대출업무 등을 병행하는 경우에 대한 등록세 종과세

질의

대도시내에서 할부금융업을 영위(할부금융업과 시설대여업을 겸업)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립연도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조제1항제2호의 매출채권의 양수·관리·회수 업무 및 같은 항 제3호의 대출(어음할인을 포함)업무(이하 '대출업무 등'이라 함)를 병행하는 경우 '대출업무 등'에 대한 등록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7호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할부금융업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종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호에서 여신전문금융업이라 함은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2호 및 제13호에서 할부금융업이라 함은 재화 및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행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하면서 여신전문금융업(제1호)과 대출업무(3호)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 관련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7호에서 할부금융업을 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도시내에서 할부금융업을 영위(할부금융업과 시설대여업을 겸업)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립연도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조제1항제2호의 매출채권의 양수·관리·회수 업무 및 같은 항 제3호의 대출(어음할인을 포함)업무를 병행하는 경우라면 할부금융업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세운영과-17('08.5.23)]

22. 사회복지법인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여부

질의

사회복지법인이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2006.6.20)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 제109조제1호, 같은 법 제127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목적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등록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이나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등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2006.6.20)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면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 것이고, 다만, 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 취·등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당해 부동산의 사용현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13('08.5.23)]

23. 어업권 피해보상금 및 기부채납 조건의 수역시설 공사비의 취득세 과표 산입여부

질의

- ① 서산비축기지 입출하부두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어업권 손실에 대한 어업권피해보상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② 항만공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수역시설(정박지, 선화장)에 투입된 공사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한 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며, 동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총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 : 토지취득 시 지출한 이주비 등 보상금은 설혹 취득대상인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인 주민 등에게 토지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과세대상물건인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95누4155, 1996.1.26)에 비추어 볼 때, 귀문의 경우와 같이 항만건설공사를 함에 있어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업권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관련 법률 및 피해어민들과 체결한 약정서에 의거하여 지급하는 경우 어업권피해에 따른 보상금은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그 지급원인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사료되오나, 이에 해당되는 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 후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다. 질의 나 :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항만



공사 사업시행 승인조건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는 조건으로 하는 수역 시설(정박지, 선화장)이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의 요건에 충족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당해 수역시설을 조성하는데 투입된 공사비는 기부채납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므로 법인 장부상에 공사원가로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세운영과-23('08.5.26)]

24. 송전선로용 임야에 대한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여부

질 의

소유 임야가 초고압선 송전선로로 이용 될 경우 과세대상 구분상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와 사권제한토지로 보아 재산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초고압선 송전선로로 이용되는 임야에 대해서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하여야 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며,
- 다. “사권제한 관련 개별법에 의해 지정된 지역으로서 토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토지를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 토지” 중 그 제한의 정도가 극히 큰 일부 토지에 대하여만 사권제한 토지로 보아 일부 재산세가 경감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운영과-25('08.5.27)]

25. 파산법인에 대한 체납처분

질의

2003.6.2.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이 납부한 2007년 법인세에 대한 환급금이 2008년도에 발생한 경우, 위 환급금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인지 아니면 파산자가 새로이 취득한 재산인지 여부

회신

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제1항에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귀 문과 같이 체납자인 부동산 신탁 회사가 2003년도에 파산선고를 받은 후, 파산재단이 2007년에 예금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2007년 귀속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는 그 환급금은 파산자가 아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운영과-28('08.5.27)]

26. 종교단체의 학원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여부

질의

교회가 교회건물의 일부를 5-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보육시설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어·영어·수학·논술 등을 가르치는 학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사용부분에 대한 지방세 부과여부

<사실관계>

- 교회 본관건물 신축(2005.5) : 지하2층~지상7층(대한예수교장로회 수자산정교회)
 - 2006.6 : 본관 중 4층을 비인가 어린이 보육시설로 사용(20~25만원/월)
- 본관 인근 건물 매입(2006.6) : 7층 701호(대한예수교장로회 수자산정교회)
 - 2007.3 : 초등학생 대상 국어·영어 등을 가르치는 학원으로 사용(23~28만원/월)



회신

가.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동조 제1호, 제127조제1항제1호, 제1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 2 및 제7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교회)가 교회건물의 일부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영어·수학·논술 등을 가르치는 학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한다 할 것 (행심 2004-394, 2004.12.29)이므로 당해 교회의 건물 중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영어·수학·논술 등을 가르치는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유·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38('08.5.31)]

